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09. .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행정을 실현하고 대민행정 서비스 질 향상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개정
 -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를 18층이하)로 조정 (안 제58조의 2, 별표4)
 - 계획관리지역내 입지 가능한 23개 업종 추가(안 별표1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내에서의 건폐율 조정 (건폐율 : 당초 60% → 변경 70%) 완화 (안 제60조)
 - 도시계획위원회 당연직인 위원장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함 (안 제69조)
-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 요건 완화 (안 제23조)
 - 도로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 녹지지역에서 현실성 없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규정 삭제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조정

- 경제자유구역내의 용적률을 100분의 150이하로 완화하여 기업 경쟁력 제고 유도 (안 제67조의3)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하여 PC방 허용 (안 별표3)
- 주민 및 실과의견 등 반영하여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개정
 - 읍·면지역의 기존 자연 표고가 높아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에 맞추어 개발행위허가 기준 완화 (안 제22조)
 -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산림에서의 입목본수도를 구미시 평균 입목 축적으로 변경 및 완화(당초 : 입목본수도 60% →조정 : 구미시 평균 입목 축적의 80%) 조정(안 제22조)
 - 상업지역내 일반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시 주거지역으로부터의 이격거리 제한규정 완화(전용주거 300m→100m, 일반주거 100m→10m, 준주거50m→10m) 조정 (안 별표7, 별표8, 별표9, 별표10)
 - 기존 관리지역의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으로의 세분에 따른 묘지관련 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례보완 (안 별표17, 별표18)
 - 농림지역 내 공공용 건축물(파출소, 보건소등) 설치 가능토록 개정 (안 별표20)
- 기타 조례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보완사항 개정
 -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안 제19조)

3. 참고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구미시 조례 제 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호 중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1. 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8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조림된 임야는 조림일로부터 5년 이내를 100퍼센트로 본다.

제23조 본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제23조제1호 중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를 “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로 하며,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제23조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58조의2 중 “15층 이하로 한다” 를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이하)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가목 및 나목 중 “15층 이하”를 각각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한다)” 로 한다

제60조제5호 중 “60퍼센트 이하”를 “70퍼센트 이하” 로 한다

제6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제67조의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4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9조제2항 중 “부시장이 되며” 를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로 한다

별표 3의 제2호 가목 중 “아목”을 “아목(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 제외)”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 및 제2호 중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를 “ [18층 이하(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한다] ”로 한다.

별표 7 제1호, 별표 8 제1호, 별표9 제1호부터 제2호, 별표 10 제2호 중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를 각각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

지역으로부터 50미터”를 각각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로 한다.

별표 17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의 제2호 중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의 제2호 자목 (4)호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의 제2호 가목 중 “동호 사목”을 “동호 바목 및 사목” 으로 한다

별표 24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행	개정안	개정이유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 6.(생략)	제19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2. ~ 6.(현행과 같음)	건축법 개정사항 반영
제22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생략) 1. <u>높고 6센티미터 이하의 치수는 제외하고 조립목은 포함하는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토지로 하며 입목본수도 산정기준은 별표24에 의한다</u> 2. (생략) 3. <u>표고 120미터 미만인 토지(다만 형질변경대상 토지가 기존의 도로와 접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표고 150미터 미만까지 허용)</u> ② (생략)	제22조(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1. <u>입목축적은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적의 8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조립된 임야는 조립일로부터 5년 이내를 100퍼센트로 본다.</u> 2. (현행과 같음) 3.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 제2호 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의견 반영

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
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을 허가 할 수 있다. <단서신설>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
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 할 것을 조건으
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 물 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오
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

<단서 신설>

- 2.~3.(생략)

<신 설>

.....
.....
.....
.....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를 말한다.

- 1.신청지역에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
지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
치 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
.....
.....
.....
.....
.....
.....)
단,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
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
고 할수 있다.

.....

- 2.~3.(현행과 같음)

4.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미만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기존도로 (건축법 제2조
제1항제11호에 의한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
습도로, 마을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허
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제58조의2(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영 별표5 제 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는 <u>15층 이하로 한다</u>.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생략)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조에 따라 정비구역 안에서 「건축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u>15층 이 하</u>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따라 아파트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 건축물의 층수를 <u>15 층 이하</u>	제58조의2(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8층 이하 (2개동 이상은 평균 <u>층수 18층 이하</u>)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18층 이 하 (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u>이하로 한다</u>) 나. 18 층 이하 (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u>18층 이하로 한다</u>)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60조(기타 용도지구·지구 등의 건 폐율)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용 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4. (생략)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률」 제2조 제5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u>60퍼센트 이하</u> 6. (생략) <u><신 설></u>	제60조(기타 용도지구·지구 등의 건 폐율) (현행과 같음) 1. ~4. (현행과 같음) 5. : <u>70퍼센트 이하</u> 6. (현행과 같음) 제67조의3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제69조(구성)① (생략)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⑤ (생략)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u>아목</u>, 차목, 카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 바.(생략)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u>(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u>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u>	<u>적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4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제69조(구성)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u>아목</u>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소 제외), 차목, 카목 및 안마시술소·안마원을 제외한다) 나. ~ 바.(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5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u>[18층 이하 (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 18층 이하)로 한다.]</u>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u>[18층 이하 (2개동 이상은 평균층수</u>
--	--

가. ~ 파. (생략) 【별표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8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및 동 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u>300미터</u>,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u>100미터</u>, 준주거지역으로부터 <u>50미터</u>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2. (생략) 가. ~ 사. (생략) 【별표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영 별표9 제1호 각 목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이하인 것과,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일반숙박시설 및 동 별표 제16호의 위락시설의 경우에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u>300미터</u>,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u>100미터</u>, 준주거지역으로부터 <u>50미터</u>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u>18층 이하)로 한다]</u> 가. ~ 파. (현행과 같음) 【별표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u>100미터</u>,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u>10미터</u>, 준주거지역으로부터 <u>10미터</u>..... 2. (현행과 같음) 가. ~ 사. (현행과 같음) 【별표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u>100미터</u>,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u>10미터</u>, 준주거지역으로부터 <u>10미터</u>	
--	--	--

가. ~다. (생략)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 시설의 경우는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마. ~ 바. (생략)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2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다. (생략) <u><신 설></u>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사. (생략) <u><신 설></u>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전용주거지역으로부터 100미터, 일반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준주거지역으로부터 10미터 마. ~ 바. (현행과 같음) 【별표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 【별표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6호의 <u>묘지관련시설</u> 【별표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	--------------------------------------

가. ~ 아. (생략)

자.(생략)

(1)~(3) (생략)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7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17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7403	날염가공업
17409	기타 섬유 염색 및 정리업
18201	<u>원모피 가공처리업 <삭제></u>
19101	원피가공업
19102	<u>재생 및 특수 가공가죽 제조업<삭제></u>
21110	<u>펄프 제조업 <삭제></u>
21121	신문용지 제조업
21122	인쇄 및 필기용지 제조업
21123	<u>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삭제></u>
21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23210	원유 정제처리업
23221	<u>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삭제></u>
23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4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 제조업
24112	석탄 화합물 제조업
24113	<u>천연수지 및 나무화합물 제조업<삭제></u>
24119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24129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업
24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4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4141	<u>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삭제></u>
2414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유기질 비료는 제외)
24151	합성고무 제조업
2415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4153	<u>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삭제></u>
2421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421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423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품관련제품 제조업
24311	<u>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삭제></u>
24312	농약 제조업
24321	일반도료용 및 관련제품 제조업
243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4332	<u>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비누제조업 중 성형가공 및 치약 제조는 제외) <삭제></u>
24341	비감광성 기록용 매체 제조업
24342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4391	<u>가공 및 정제업 제조업 <삭제></u>
24392	<u>방향유 및 관련제품 제조업(합성향료에 한함) <삭제></u>
243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가. ~ 아. (현행과 같음)

자.(현행과 같음)

(1)~(3) (현행과 같음)

(4) 아래의 표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장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품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화학제품 제조업	24113	합금철 제조업
24401	합성섬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111	타이어 튜브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112	타이어 재생업 <삭제>	24123	철강선 제조업
25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삭제>	24132	강관 제조업
25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삭제>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5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5292	플라스틱 접착테이프 및 기타 표면도포 제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6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6993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11	제철 및 제강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112	합금철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7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삭제>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7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7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5922	도금업
27123	철강선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7132	강관 제조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7191	절단가공 및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7199	그 외 기타 철강산업<삭제>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 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7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
27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삭제>		
27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7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삭제>		
27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7290	기타 제1차 비철금속 산업		
27311	선출주물 주조업		
27312	강주물 주조업		
28921	금속 열처리업<삭제>		
28922	도금업		
28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28929	기타 금속처리업		
28991	금속 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314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 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삭제>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37100	재생용 금속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 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삭제>		
37200	재생용 비금속 가공원료 생산업(단순히 파 쇄, 압축, 절단하는 경우는 제외)<삭제>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생략) 2.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수 있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u>동호</u> <u>사목</u>에 해당하는 것 나. ~ 마. (생략)	【별표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 할수 있는 건축물(제33조) 1. (현행과 같음) 2.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u>동호</u> <u>바목</u> 및 <u>사목</u>에 해당하는 것 나. ~ 마. (현행과 같음)	
--	--	--

[별지]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허용되지 않는 공장업종

(별표 19 제2호 자목 (4)호 관련 - 아래의 업종은 계획관리지역내 입지할수 없음)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13401	숨 및 실 염색 가공업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13403	날염가공업
13409	그 밖의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제조업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17129	그 밖의 종이 및 판지 제조업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19229	그 밖의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질 제조업
20119	그 밖의 기초 유기화학물질 제조업
20129	그 밖의 기초 무기화학물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209	그 밖의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유기질 비료는 제외)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21101	의학용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21300	의료용품 및 그 밖의 의약품 관련 제품 제조업
20412	농약 제조업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매체 제조업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0499	그 밖의 분류가 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업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제조업
23994	석면·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24111	제철 및 제강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업종별 품목분류
24113	합금철 제조업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24123	철강선 제조업
24132	강관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생산업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29	그 밖의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24290	그 밖의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4311	선출주물 주조업
24312	강주물 주조업
25922	도금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25929	그 밖의 금속처리업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28202	축전지 제조업(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이차전지, Ni-MH 이차전지는 제외한다)
26221	인쇄회로판 제조업